수원고등법원 공고 제 2026 - 17호

한시임기제공무원(9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 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임기제공무원(9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수 원 고 등 법 원 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채용예정인원 등

채용예정 직급	근무예정기관	담당업무	채용예정인원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수원고등법원	사무보조 및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1명

※ 담당 직무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근무조건 등

가. 근무기간 : 2026. 11. 30. ~ 2026. 12. 31.(예정)

나. 근무시간

○ 점심시간을 제외한 주 35시간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

예시 : 09:00 ~ 17:00 또는 10:00 ~ 18:00 등

다. 보수 등

1)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제30호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월지급액, 단위: 원)

등급	적용대상공무원	봉급기준액 (40시간 기준)	주 35시간 환산 봉급기준액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346,300	2,053,012

2) 수당

○ 가족수당 등 기타수당 별도 지급(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3) 고용보험 임의가입

○ 공무원연금·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가능(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다. 학력, 성별 : 제한 없음(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 속기경력자 우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에 한함

▸ 비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하며, 직무분야별 자격증 종류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참조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우대사항은 응시자격이 아니므로 우대사항이 없어도 응시 가능하며, **우대사항에 관한 각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여부를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해당 업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가 점수가 고득점인 순서로 최종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27.(화) ~ 10. 30.(금) 10:00 ~ 17:00	2026. 11. 2.(월)	2026. 11. 4.(수) 14:00	2026. 11. 13.(금)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수원고등법원 홈페이지(https://swgodung.scourt.go.kr, 새소식)에 공고 **(개별통지 아니함)**

가.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 2026. 11. 4.(수) 14:00 수원고등법원 17층 소회의실(예정)

※ 위 시험일의 경우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최종 합격자의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26. 10. 27.(화) ~ 2026. 10. 30.(금) 10:00 ~ 17:00

※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은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처

❍ 수원고등법원 총무과 (문의 031-639-1612)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17층

다. 응시원서 교부방법

❍ 수원고등법원 홈페이지(https://swgodung.scourt.go.kr) 또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s://exam.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1) 정부수입인지 5,000원을 첩부하여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우송(접수 마감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함)**

2)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 회송용 우편봉투(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우표를 부착)를 동봉하며, 제출하는 응시원서 봉투 겉표지에 '한시임기제공무원(9호)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고등법원 총무과 인사계

3)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정부수입인지 미첨부 등)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당원 소정 양식, 자필 또는 워드 작성 가능)

나. 이력서 1부(당원 소정 양식, 자필 또는 워드 작성 가능)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1부(당원 소정 양식, 자필 또는 워드 작성 가능)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당원 소정 양식, 자필 또는 워드 작성 가능)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으로 직접 제출 시에는 접수처에 자격증 원본을 지참

※ 자격증 원본 대조는 2차 면접시험 시 실시하고, 자격증 미참 등으로 원본대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증 원본대조 확인 자는 제외)

바. 속기 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속기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하고, 속기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 포함)

아. 취업지원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등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자격요건을 검증울 위한 동의서 1부(첨부 양식)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등 위 제출서류 이외의 서류는 접수받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A4(210㎜×297㎜) 크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자격, 경력 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한글번역본이 첨부되지 않는 경우 관련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나. 응시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채용) 후에도 허위기재 또는 증빙자료 허위제출 등 결격사유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아. **시험 장소, 시험 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고등법원 총무과(☎ 031-639-161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9호) 직무기술서

채용예정기관명
수원고등법원

주요업무	○ 사무보조(일반행정, 송무, 비송, 판사실 지원업무 등) ○ 재판관련 속기업무 ○ 기타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필요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친절의식 ○ 상황인식/판단력, 업무추진능력, 의사소통능력, 업무숙지능력

필요지식	○ 재판관련 속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지식 ○ 일반행정, 송무, 판사실 지원업무 등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업무 지식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속기**	
	자격증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 등의 속기경력자 ○ 한글속기(컴퓨터)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비서 자격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등 우대	

【붙임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구분	1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①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②전몰군경, 수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③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미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① 좌측 ①의 배우자 ②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②애국지사가 이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①애국지사의 가족 ②애국지사가 이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③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①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②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 배우자	①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①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①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②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①부상자 및 희생자 ②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①부상자 및 희생자의 배우자 ②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①특수임무부상자 및 공로자 ②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③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①부상자 및 공로자의 배우자 ②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구분	5%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①의상자 본인 ②의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	①의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